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47
----------	-------

발의연월일 : 2026. 1. 5.

발 의 자 : 박수현 · 박지원 · 문진석
조계원 · 허 영 · 김영배
정태호 · 김원이 · 이개호
한정애 · 이정문 · 양문석
김주영 · 김종민 · 김기표
최혁진 · 윤후덕 · 서삼석
의원(18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인해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목소리, 얼굴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단 이용될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최근에는 이를 무단 이용하여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콘텐츠 등을 제작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이익 및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은 이미 방송 · 영화 ·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이익 및 가치를 인정받아 독립된 경제재로서 거래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사람의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및 가

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상속이나 보호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소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오늘날의 거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응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균형있게 규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 보호 및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

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안 제6조).

라. 퍼블리시티권은 퍼블리시티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

년간 존속함(안 제7조).

마.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초상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기간 및 방법, 조건의 범위에서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시사보도나 정보전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허락 없이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여 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자는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퍼블리시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간주함(안 제15조).

자.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차.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표시를 제거·변경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상등”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예명·아호·약칭 등 이명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사람을 특정한다고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모사물”이란 컴퓨터나 전자적인 방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사람의 초상등을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콘텐츠(「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콘텐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며, 디지털 모사물이 아닌 것에 컴퓨터나 전자적인 방식을 통하여 상당히 변형한 것을 포함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초상등의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 보호 및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받는 초상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상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

2. 대한민국이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초상등

3. 제2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초상등이 아니라도 그 외국에서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상응하게 보호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의 초상등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초상등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초상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 보호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호는 「저작권법」 및 「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퍼블리시티권) ①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1. 초상등을 이용하여 상품·서비스·사람·단체 등을 홍보하거나 관촉하는 행위

2. 초상등을 이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초상등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생성하여 이용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자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명시적 반대의사가 없는 한 상속된다.

제7조(보호기간) ① 퍼블리시티권은 퍼블리시티권자(초상등에 의하여 특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8조(이용허락) ①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초상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기간 및 방법, 조건의 범위에서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퍼블리시티권자는 미성년자일 때 체결한 초상등의 이용허락 계약을 성년이 되었을 때 종료할 수 있다.

제9조(퍼블리시티권의 소멸) 퍼블리시티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자가 그 권리의 상속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퍼블리시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10조(퍼블리시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허락 없이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시사보도나 정보전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3. 연구, 교육, 비평, 논평, 풍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사람이 성대모사, 모창 등 흉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콘텐츠의 창작에 이용하는 경우

6. 전기(傳記)나 평전의 방식으로 창작에 이용하는 경우

7. 상품이나 서비스에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 및 홍보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② 초상등을 이용한 콘텐츠가 담긴 유형물이 해당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허락 없이 그 유형물을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공정 이용) ① 제10조의 경우 외에 초상등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초상등의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공중이 특정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

3.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초상등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12조(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표시) ①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여 공
연·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해당 디지털 모사물
을 수정·변형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디지털 모
사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에 의하여 표시
되거나 고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표시(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되거나 고지
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거하거나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대상과 표시 내용,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분쟁의 알선·조정, 감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분쟁의 알선·
조정, 감정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3조부터 제119
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과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
는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저작권에 관한 분쟁”은 “퍼블리시
티권에 관한 분쟁”으로, “저작권의 침해”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로 각각 본다.

제14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

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침해로 보는 행위) 퍼블리시티권자나 그 상속인의 허락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본다.

1. 퍼블리시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2. 공중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유통할 목적으로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16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침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5. 침해자의 재산상태

6.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7. 디지털 모사물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표시 여부

제17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6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9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초상등을 복제·전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02조부터 제103조의3까지 및 제1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등”은 “초상등”으로, “저작권”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